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5 선고 2019가단5930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피고1. 주식회사 B

2. C

변론 종결무변론

판결 선고2019. 6. 25.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5,705,753원 및 그중 244,500,000원에 대하여 2018. 7. 2.부터 2019. 4. 5.까지는 연 9%,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5,705,753원 및 그중 244,500,000원에 대하여 2018. 7. 2.부터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9%,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일부 기각의 이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변경되어 2019. 6. 1.까지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에 관하여는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이율을, 2019. 6. 1.부터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게 되었다.

판사안성준

별지